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20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목 차

I. 평가목적 및 개요	1
II. 평가대상 및 방법	5
III. 지표적용 및 체계	15
IV.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27
① 안전보건경영체제	29
② 안전보건관리	37
③ 안전보건활동	47
③-1 작업장	47
③-2 건설공사 발주현장	53
④ 안전보건성과	61

1. 평가목적 및 개요

I. 평가목적 및 개요

1 평가목적

- ☐ 공공 작업장에서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기관의 위험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관리 실시를 통해 안전보건수준 향상 도모

2 평가개요

< 평가근거 >

-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 1 > 평가의의

- 공공기관에서 작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노동부)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노력 등 안전보건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기재부)

< 2 > 평가수행

- 고용노동부(주관) - 안전보건공단(수행)의 평가 체계

< 3 > 평가내용

-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 성과 등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평가

*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 본평가(‘21년 상반기)와 현장작동성평가(‘20년 하반기)로 구분하여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현장의 안전활동 이행 수준을 평가

3 전략체계

□ 공공기관 안전경영 정착을 위한 단계적 확대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표

'22년 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 감소

방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 작업장의
안전 활동 강화

전문성·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접근
전략

도입기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본사

시스템 중점
(법준수, 대책이행)

공공부문

1분기

성장전략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본사 + 현업작업장(발주현장 포함)

시스템 중점 + 현장 중점
(¹본평가 + ²현장작동성평가)

공공부문 + 민간 확산

연중 상시

발전전략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소)

현업작업장

기타
공공기관
(52개소)

전공공기관

전 공공작업장
(민간부문 선도)

4 추진방향

①

공공작업장에 대한 안전활동 평가 커버리지 확대



• 평가대상기관의 확대, • 현장 안전활동 평가 강화

②

지속적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고도화



• 기관 특성별 유형적용, • 지표체계 개편, • 신규 평가지표 개발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 공공기관 현황 실태조사, • 평가결과 환류

II. 평가대상 및 방법

II. 평가대상 및 방법

1 평가 대상

○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그룹(6개 그룹)

그룹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I형	II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180개소	10개소	26개소	13개소	40개소	39개소	52개소*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실, 전시·관람시설 및 안전 관리중점기관

○ 평가대상기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28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6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2개)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39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 기타공공기관 (52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연구실 (38개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시 및 관람시설 (9개소)	태권도진흥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예술의전당
안전관리중점기관 (5개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유통(주), 한국산업은행

○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지표적용 유형등 분류 근거

- ①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기재부)
- ②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에 따른 주관부처 요구 (기타공공기관)
- ③ 피평가 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대상초안마련 및 기관별 이의검토
과정을 거쳐 수준평가 실무평가 위원회 심의 의결

2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 1 > 작업장(지사, 직영사업소 등)

□ 대상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중점기관 중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기술서비스 제공과정 등 기관의 주요 사업에서 다소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 보유 기관
 - ② 다수의 국민·외부고객(민원인 등)이 이용하는 교육장, 관람장, 경기장, 체육관, 대합실 등 대국민 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 ③ 기관의 주요 사업을 위해, 도급·건설발주 등의 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기관
 - ④ 사고·부상자, 사망자 발생기관, 기타 사회적 이슈 발생 및 우려기관 등
 - ⑤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등

□ 대상기관 : 64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31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1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32개)	기금관리형 (3개)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집행형 (20개)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9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1개)		코레일유통(주)

< 2 > 건설공사 발주현장

□ 대상 선정기준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중

* 총 공사금액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별 공사금액을 의미하지 않음.

※ 『공공기관 업무특성 조사 및 기초 현황 조사』 결과(6월)와 근로복지공단 산재가입현황을 통해 대상 선정

① 공 정 률 : 구조물 공사 위주로 공정이 진행되는 현장(공정률 60% 이내)

② 공사종류 :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보유한 건설공사 현장(냉동 · 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층고 6m이상 거푸집 동바리, 타워크레인 및 항타 · 항발기, 2m이상 굴착, 밀폐공간 작업 등)

③ 공사기간 : 잔여 공사기간이 여유가 있는 현장(평가일 기준)

④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현장 또는 시공사

⑤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

※ 참고자료 : 공공기관 업무특성 조사 및 기초 현황 조사

□ 대상기관 : 35개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18개)	공기업 I (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0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 기관 (15개)	기금관리형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9개)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2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2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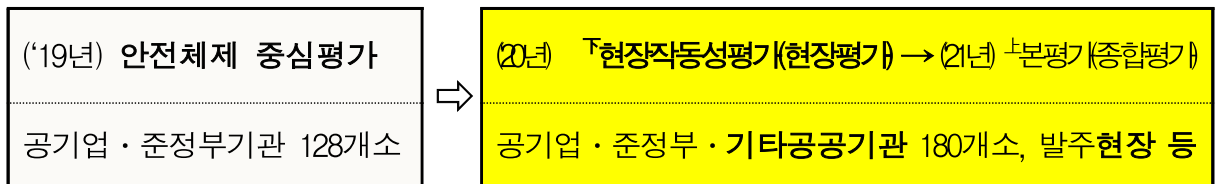
3 평가체계 및 시기

□ 평가체계

-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는 **본평가**와 안전보건조치 등 실행사항 중심의 **현장작동성평가**로 구분

① 현장작동성평가 ⇒ ② 본평가 ⇒ ③ 최종 평가결과 결정

- 공공기관 실질적인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직영사업소 및 발주공사 현장 등으로 안전활동 평가 범위를 확대(舊)본사중심→(現)현장까지 확대)
- 현장*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하여 당해년도 현장작동성평가 후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안전보건활동 수준 등을 본평가 시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 : 공공기관 본연의 사업 및 도급·건설발주의 행위가 실행되거나 제반시설이 있는 곳

□ 평가 프로세스



□ 평가 시기

- **현장작동성평가**(‘20년 하반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제 및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조치 및 실행 등 이행수준을 평가**

* 직영사업소, 현업작업장 및 발주현장 등을 방문

- (평가시기 및 기간) ‘20년 8월~10월 중 기관별 2일

구분	8월	9월	10월
평가 그룹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강소형) 기타공공기관
	건설발주 현장		

※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그룹별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추어 실시
※ 평가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평가**(‘21년 상반기)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경영 성과, 조직체제 등 기관의 전사적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기 및 기간) ‘21년 1월~2월 중 기관별 2일

구분	‘21년 1월	‘21년 2월
평가 그룹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타공공기관

※ 평가시기 예정(안)이며, 별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반 구성

- 기관의 사업, 현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2~5명의 안전전문가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 평가반별 현장 규모에 따라 **2~4명**으로 구성

※ 노동부 1명, 안전보건공단 1~3명 등 탄력적 운영

- (**본평가**) 기관사업 등을 고려하여 반별 **4~5명**으로 구성

※ 노동부 1명, 외부전문가 1~2명, 안전보건공단 2명 등 탄력적 운영

4 평가결과 심의 등

□ 실무평가 위원회

- 평가 프로세스별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평가지표 적용 유형 결정) 공공기관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기관별로 적용하는 지표유형 결정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결정) 공공기관의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 결정
- (이의검토 및 심의)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잠정등급 결정 심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잠정등급 결정 등
- (기타) 평가 실시과정 중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 등 심의

실무평가 위원회 구성·운영(안)

구성	◇ 구성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노동부, 공단 - (위촉직 위원) 학계·노동계·민간 전문가
운영	◇ 위촉직 위원은 평가 대상기관과의 이해관계 제척사유를 명확히 확인 후 위촉하여 투명성 확보

□ 평가심의 위원회 [노동부]

- 심의·의결 기구로서 공단(실무평가 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평가점수 및 등급 결정

평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안)

구성	◇ 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당연직)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 - (위촉직) 노동계·경영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운영	◇ 위촉직 위원은 평가 대상기관과의 이해관계 제척사유를 명확히 확인 후 위촉하여 투명성 확보

5 평가결과의 제공

□ 경영평가 참고자료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정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경영평가단 제공*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경영관리 범주」 - 「사회적 가치 구현」 - 「안전과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재부 송부)

□ 개별기관 송부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의 평가내용에 한하여 송부

6 참고사항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관련 협조사항

-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 준비
- 경영진 및 근로자 등 면담 지원
-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 현장 안내 지원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가급적 전산파일(hwp, pdf 등) 또는 내부 전산망(ERP, EHS 시스템 등)을 이용한 on-line 형태로 증빙

※ 종이문서 출력 및 제본 등 별도 자료 작성 지양

□ 기타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불필요한 부대지원(식사·선물·향응·의전 등) 절대 금지

- 평가기간 중, 청렴도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본부) 합동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예정

※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현지 평가반에 과도한 응접 행위 금지

Ⅲ. 지표적용 및 체계

1 지표 적용 유형

- 공공기관의 현업(작업장)의 특성·위험도를 고려하여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기관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 ④ 기타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서비스집중형) 금융, 보험, 보증 등의 행정서비스, 위락·공원시설 관리서비스 및 자격·검정·검사·감독·시험 등 기술서비스 중심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산업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2 지표 체계

-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을 P-D-C-A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4개 분야로 구성

[19년대비 변화]

- '19년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체제 및 계획 분야를 통합*하고 지표유형별 가중치 차등 적용
 - * 안전보건경영체제+안전보건활동계획 → 안전경영체제
- '20년도에는 현장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를 관리적 분야와 활동 분야로 세분화*하고 가중치 상향
 - * 안전보건활동수준 →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활동

[지표 체계 요약]

['19년도]

4개 분야, 7개 영역

4개 유형

(1)형[종합형], (2)형[발주형], (3)형[수급형], (4)형[기본형]

☞ 건설발주, 수급업체 유무에 따른 적용 형태

['20년도]

4개 분야, 5개 영역

2개 유형

기간산업형 or 서비스집중형

☞ 공공기관의 업무 위험도에 따른 유형

< `19년도 >

분야	영역
① 안전보건체제 • 4개 항목	
② 안전보건활동계획 • 2개 항목	
③ 안전보건활동수준 [4개영역] • 26개 항목	㉠-1 【공통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4 【현장 안전보건관리】 ㉠-2 【발주 안전보건관리】
④ 안전보건활동성과 • 2개 항목	

< `20년도 >

분야	영역	평가 종류	
		현장 작동성 평가	본평가
① 안전보건경영 체제			
② 안전보건관리			
③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		
	㉠-2 【건설공사 발주현장】		
④ 안전보건성과			

※ 본평가는 '21년 상반기, 현장작동성 평가는 '20년 하반기 실시

① 평가항목(전년비교)

- (안전보건경영체제) ^舊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활동계획 분야 6개 항목
→ ^現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5개 항목으로 개편

<현행>		<개편>	
분야	항목	분야	항목
안전보건 체제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안전보건 경영체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수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역량수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투자
	안전보건경영 투자수준		안전관련 규정 및 절차·지침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기본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舊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 2개 영역(공통, 수급)
→ ^現안전보건관리로 통합, 유형별 7~8개 항목으로 축소

<현행>			<개편>	
분야	영역	항목	분야	항목
안전보건 활동수준	공통 안전보건관리	14개 항목	안전보건 관리	• 기간산업형 : 8개 항목
	발주 안전보건관리			• 서비스집중형 : 7개 항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현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활동) ^舊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 2개 영역(발주, 현장)
→ ^現안전보건활동 2개영역(작업장, 건설공사 발주현장)으로 개편
· 지표적용 유형별 4~7개 항목으로 차등 적용, 건설공사 발주현장 6개 항목으로 개편

<현행>			<개편>	
분야	영역	항목	분야	영역
안전보건 활동수준	공통 안전보건관리	6개항목	안전보건 활동	작업장 안전보건활동 • 기간산업형 : 7개 항목 • 서비스집중형 : 4개 항목
	발주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활동(해당시) • 6개 항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7개항목		
	현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성과) ^舊안전보건활동성과 분야, 2개 항목 → ^現안전보건성과 3개 항목으로 확대

② 지표내용별 등급 및 점수 산정

-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 정성평가 실시(사망사고 감소성과는 계량 평가)
- 평가유형, 분야별로 계층화한 후 전문가 집단이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을 이용

- 평가 유형, 분야별,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chy)화 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

- 평가지표 결측항목 발생시 환산

-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분야는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 적용받은 항목만으로 평가 후 이를 해당 분야에서 환산

· 예시)
$$\text{환산점수} = \frac{\text{배점의 합계}}{\text{결측제외 배점의 합계}} \times \text{득점의 합계}$$

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환산점수
㉔ 안전보건관리 (8항목)	합 계	100	46.0	65.71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0	42.85
	2. 위험성평가	30	-	-
	3. 안전보건교육	40	16.0	22.86

- 본평가와 현장작동성 평가결과의 산출 비중

-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분야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로 반영하되, 기관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표별로 본평가 시 책임평가원이 일부 조정 가능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의 산출 비중>

구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건설공사 발주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본평가	현장작동성평가
B.안전보건관리	50%	50%	70%	30%		
C.안전보건활동	20%	80%	20%	80%	20%	80%

※ 단, 안전보건활동 분야 중 건설공사 발주현장 영역은 발주공사특성(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C.2.1~C.2.6) 중 일부를 본평가에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현장작동성 평가내용으로 전체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작동성평가를 100%반영

※ 적용 비중은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적용

- 각 항목별 점수 및 합계점수 결과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을 갖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③ 결과통보 및 제출

-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정부 및 기관에 송부
 - 평가그룹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종료 후 3월 이내에 통보
 - 각 기관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
- ※ 기관별 결과의 공개·통보 범위는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평가지표 총괄표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적용지표(개)	
		①	②	본평가	현장 작동성
	합 계	1,000	1,000	25	17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300	300	5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8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8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4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	×
㉡ 안전보건관리 (7항목)	소 계	250	250	7	7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활동	30	30	○	○
	3. 위험성평가	40	40	○	○
	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40	○	○
	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30	○	○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40	40	○	○
	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40	40	○	○
㉢ 안전보건활동 (10항목)	소 계	200	200	10	10
	【㉢-1 작업장】	100	200	4	4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20	40	○	○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60	○	○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60	○	○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20	40	○	○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0	-	6	6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0	-	○	○
	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35	-	○	○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5	-	○	○
㉣ 안전보건성과 (3항목)	소 계	250	250	3	0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50	50	○	×
	2. 안전문화 확산	100	100	○	×
	2. 사망사고 감소 경과	100	100	○	×

①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4

분야별 평가지표

A 안전보건경영체제

-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 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규정, 안전기본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A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8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8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안전관리 중점기관]
	4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획계획 수립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기본계획 구성내용 및 이행수준

B 안전보건관리

-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30	B.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 증진활동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40	B.3.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40	B.4.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제도 운영
	30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및 비상 시나리오 선정·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와 이행 3.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개선 노력
	40	B.6.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 수준평가 기준·방법 등 2.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실행
	40	B.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㉔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분야, 건설공사 발주분야로 구성

☐ C - 1. 작업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1. 작업장】		
	2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30 (60)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30 (60)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20 (40)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 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 괄호 안 배점은 건설공사 발주현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 - 2. 건설공사 발주현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수준 2.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10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 2.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10	C.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 2.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20	C.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35	C.2.5. 발주자의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 3.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15	C.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㉕ 안전보건성과[공통]

- 안전보건성과는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망 사고 감소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㉕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5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10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100	D.3. 사망사고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 재해 감소성과

IV.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	80
지표 정의	원·하청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평가 착안 사항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의지, 관심도, 현장활동 참여, 향후 안전보건 수준 향상 계획 등의 적정성(면담 등) 2. 사업특성과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과 구성원에 대한 공유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3.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재*·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국조실·기재부·노동부 등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련 회의·워크숍 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제20조(임원의 직무)
준비 사항	○ 안전보건경영 방침의 작성·게시·공유 증빙자료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정부주재·자체) 및 현장점검 실시 증빙자료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정기보고 실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최고경영자* 원칙적으로 면담 참여(평가기간 중 면담이 가능한 일정, 장소 제시) ※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차 상위 경영자 면담 가능하나, 소명자료 제출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	80
지표 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과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안전관리 중점기관]
평가 착안 사항	1. 직제 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권한부여,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기획, 실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부서, 구성인원) [안전관리 중점기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2.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역량(적정 자격자, 전문성 등) 및 제고노력(외부교육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3. 안전경영위원회(본사만 해당)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지침·계획 및 결과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중점기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범위(본사, 직영사업소, 사업분야 별) 및 시스템의 실행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준비 사항	○ 직제규정, 인사규정,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관련 서류, 조직도 등 ○ 안전관계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계획 및 결과, 인사규정 등 ○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계획·결과 관련 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KOSHA 18001, ISO 45001)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④안전보건경영체제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평가 착안 사항	1. ❶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 등에 따른 합리적인 편성 노력, ❷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험시설 정비, 안전사업비, 교육·훈련, 신제품·기술 개발·구매 등)과 내역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투자) 2. 안전보건 편성예산 집행·관리의 수준 ※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도
준비 사항	○ 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을 증빙하는 자료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 증빙 자료 ※ 전년대비 안전예산 편성·집행 내역 대비표, 구성항목별 주요 집행 세부내역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및 내역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④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의 작성, 내용구성, 최신화 등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평가 착안 사항	1. ❶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항의 안전보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 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등 반영 수준 ※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제도 반영 포함 등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준수, 현행법 내용의 반영한 최신화 수준, 제·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2.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작업장 위험·작업특성을 반영한 지침(기준, 수칙, 가이드 등)의 제정 수준과 관리체계, 최신화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등 관련 서류 ○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필요한 관련서류 검토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④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과 안전기본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기본계획 구성내용 및 이행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전략 설정 노력과 과정 2. 안전기본계획의 실행과제 발굴 노력, 실행 부서 지정 등을 통한 실행력 담보, 근로자 참여 수준, 이행상황 점검, 환류 등의 수준
준비 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기본계획 ○ 목표설정, 전략·실행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 사항(회의, 현장근로자 참여회의·의견청취, 조사·분석, 통계분석 등)의 증빙 자료 ○ 안전기본계획 이행점검(자체 모니터링, 변경관리 등), 장애극복 과정 및 이행결과 등 증빙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 득점 + 2득점) ※ N = 1 ~ 2의 해당점수 합계

③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B.1. 근로자 건강 유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건강진단 종류에 따른 대상자 파악, 실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실행 수준, ❷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의 파악 및 관리 수준 2. ❶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의 파악 및 실시, 측정결과 공유 수준, ❷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50%이상(소음은 노출기준 초과) 발생 공정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3. COVID-19, 독감, 동·식물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수준 ※ 참고 :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KOSHA-GUIDE H-186-2016)
준비 사항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수검안내, 최근 3년('18~'20년) 건강진단 결과표*(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사후관리**대상자 기록 및 사후관리 내역 서류, 최근 3년('18~'20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내용 확인자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조치·개선 사항은 연계 평가 ○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은 사후관리 결과로 판단하지 않음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근로자 건강진활동 사항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평가 착안 사항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지원의 적정성 * 참고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KOSHA-GUIDE, H-203-2018) 2. 근로자 건강 증진활동*(직무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 참고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 건강이상소견자에 대한 건강개선 활동을 병행하여 평가
준비 사항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자체 지침 및 사후조치 내용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 및 결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	---

B.3. 위험성평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위험성평가 활동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행점검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평가 착안 사항	1. ❶위험성평가 지침·실행계획 수립 적정성, ❷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확보 등 적정성 ※ 참고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등 송부(고용노동부, '20.1월) 2. ❶위험성평가 사전준비*·실행·개선대책 수립·개선 수준, ❷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의 적정성 * 사전준비 : 조직의 구성, 역할, 아차사고 발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 파악 자료 등 3.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위험예지훈련, 안전작업허가, 안전 점검 등) 수준
준비 사항	○ 위험성평가 지침 및 실행계획 관련 서류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규정 등) ○ 위험성평가(정기·수시) 활동자료 및 실시 결과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 자료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공유(교육, 게시 등), 위험성평가 활용 증빙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 교육과 인식제고, 참여활동 등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직영, 하청, 건설현장 노동자 등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 등 포함
평가 착안 사항	1. 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 참석률 제고 등 교육 관리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관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 (심폐소생교육, 화재예방교육 등) 2. 관리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인식수준(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 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해당공정의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담당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및 착용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제고 노력의 적정성 3.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 제도의 지침(계획)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준비 사항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각종 안전법령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파악, 교육실시 증빙자료 ○ 신고·제안·포상제도 관련 매뉴얼, 규정, 지침 등 계획서, 신고·제안·포상제도 접수목록 및 이행실적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⑩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비상 상황 및 재해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와 이행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및 비상 시나리오 선정·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와 이행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조문별 설명자료 ‘안전사고는 기관이 가입한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사망 또는 부상으로 판정된 건’ 3.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개선 노력
평가 착안 사항	1. 비상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대응 지침 작성과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의 구체적인 비상 시나리오 발굴 및 변경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관련시설·장비 관리의 적정성 ※ 참고 : ①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1-2012) ② 주요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04-2013) ③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3-2017) ④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84-2016) 2. ❶ 사고,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부서로의 전달체계(보고, 통보 등) ❷ 원인조사를 위한 조사 절차·방법·시기,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이행·전파 등의 체계 및 이행 수준, ❸ 과거 발생된 재해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사고기록 및 보존) ※ 참고 :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5-2017),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6-2016) 3.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기록 유지관리, 개선 노력의 적정성 * 위험상황 신고, 위험성평가지 사전 설문, 별도 계획에 따른 아차사고 사례 수집 등의 다양한 활동 인정
준비 사항	○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주요 사고 시나리오, 비상대응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비상대응 시설·장비 목록 ○ 재해 원인조사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 재해 원인조사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실제 개선된 현장사례(해당 시) ○ 아차사고 발굴 및 기록 유지관리, 개선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위험성 검토,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평가 기준·방법 등 2. 도급사업의 산업재해예방조치 계획·실행
평가 착안 사항	1. ①도급의 이해 및 안전관리대상 수급업체 범위설정, 수급업체 작업현황 등의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②계획단계에서 도급작업의 위험성 검토 및 제공, 도급사업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법 제61조)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과 선정절차 등의 적정성 및 수준 2. (법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계획·실행,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 (법 제58조~제60조) 도급 금지·승인, 하도급 금지, (법 제66조①)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수준
준비 사항	○ '20년도 계약상태에 있었던 도급사업 수급업체 명단(계약명, 사업장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작업내역, 연락처 등 기재) ○ 도급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검토·자문 및 입찰시 제공 등에 관련된 규정·서류 - 도급계약서(해당 부분 일부 발취)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포함 ○ 안전수준평가(재평가, 환류 포함) 기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및 적용사례 서류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도급금지 및 하도급금지 등에 관한 내부규정, 실행 계획 및 결과 서류 ○ 관계수급업체 작업관련 안전보건조치에 관련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 추가로 산재예방을 위해 지원한 사항 또는 실적 서류 포함
기타 사항	○ 본 지표는 평가 당해 연도에 종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해 평가 ○ 안전, 계약 및 도급사업 관리부서원의 면담 실시 및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의 해당점수 합계

B.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⑧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생시설 등 인프라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 및 보호구제공 등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평가 착안 사항	1.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2.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도급작업 관련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필요조치의 이행 확인
준비 사항	○ 상주와 비상주 구분한 관계수급업체 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작업내역, 연락처 포함) ○ 수급업체에 교육 및 위생시설 지원, 안전보건조치에 관련된 규정 ○ 안전보건정보 제공, 이행확인 및 시정조치 등에 관련된 서류 ○ 관계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원실적, 교육 이행확인실적 서류 ○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현황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지표는 평가 당해 연도에 종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급에 대해 평가 ○ 현장 확인, 도급 및 수급 업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㉔-1 작업장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	20	40
지표 정의	작업장 정리정돈 등 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 착안 사항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 3. 작업 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9조
준비 사항	○ 화학물질 취급목록(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건물의 레이아웃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의 작업 실시 내용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	30	60
지표 정의	자체 보유 또는 외부 반입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 자체 보유 또는 반입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등의 안전 조치 상태 ❷ 전기 기계기구, 배선 및 이동전선에 대한 감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상태, ❸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실시, 인증제품 사용, ❹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 전원 투입·기동에 의한 끼임·감전 위험 방지조치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❶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❷ 기둥·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여부 등 붕괴 위험 방지 조치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6장, 제2편 1장 및 제3장,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84-2016)
준비 사항	○ 기계·기구·설비 목록, 법정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목록, 검사·점검 기록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	---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	30	60
지표 정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중독·질식 위험 방지 활동의 수준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인화성액체·가스·고체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작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 건물의 실내 냉·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보일러, 냉동기 등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냉매 등의 취급과 관련해서는 적용 제외 2. ①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관리 상태 및 사용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주변시설(바닥 등),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주지 및 보호조치, ② 질식 위험공간(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위치 파악 및 관리(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상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예방장비·시설* 등의 운용 적정성 평가 * 송기마스크, 배풍기, 구조 삼각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안전대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장~3장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준비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 취급장소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 현황 ○ 질식위험공간 파악 현황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화학물질 보관장소 등 일부 현장 확인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 화재·폭발·누출 비상 시 대응을 위한 소방설비 등은 'B.4.1'에서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	20	40
지표 정의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과 승인권자의 안전조치 승인여부, 현장입회 및 확인 여부 등의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❷ 작업중지 요청제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 고소작업, 화기취급,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 정비보수 작업, 질식위험 작업 등 ※ 참고 : 안전작업 허가지침(KOSHA GUIDE P-94-2017),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을 위한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수준
준비 사항	○ 고위험 작업의 작업표준 또는 절차서 ○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 실제 발행된 안전작업허가서 사례(해당 시) ○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 검사·시험 등 외부 출장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직무)와 관련한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별도 면담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0.1. ~ 10.2. 의 해당점수 합계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	-
지표 정의	공사 계획단계에서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발굴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내용 및 관리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수준 2.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❶발주자의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 발굴 수준(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 자문, 유사 또는 동종 건설공사의 사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문서 검토 등)과 ❷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조건 도출수준 ※ 참고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이력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고용노동부)
준비 사항	○ 2019.6.1. 이후 설계 입찰 공고 대상 목록(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 전년도 평가된 대상의 경우 별도 표시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과 관련된 활동 및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작성 내용의 근거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관련 활동사항(회의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지표는 2019.6.1.이후 기관에서 (기본)설계 입찰 공고한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됨 * 총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	-
지표 정의	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검토 및 설계 반영 수준과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 2.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발주자로서 설계자가 실행하는 위험성평가의 지원,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지원·검토 및 그 결과를 실시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및 반영수준 ※ 참고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고용노동부) 2. ❶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제공 및 주요내용 공유 수준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❷공사금액, 공사기간 산출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이력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고용노동부)
준비 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작성 내용의 근거자료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발주자 활동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 설계에 반영한 내용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지표는 기관에서 발주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	-
지표 정의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검토 및 확인 수준과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관리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 2.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발주자로서 시공자가 실행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발주자 확인기준 및 후속 처리 등) ※ 참고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고용노동부)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2. ①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제공 및 주요내용 공유 수준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이력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고용노동부)
준비 사항	○ 공사안전보건대장 및 작성 내용의 근거자료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발주자 활동사항(회의, 안전보건전문가 참여 사항 등) ○ 시공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발주자 확인 기준 및 활동사항 등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지표는 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20	-
지표 정의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계획, 활동 및 조치 결과 등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선임 또는 지정시기, 도급업체 통보, 업무 및 활동 계획(공사 도급인과 작업내용 공유, 확인 계획)과 조정자 업무 수행 지원 체계 2. 혼재된 위험작업에 대한 조정 활동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관리수준 • 위험작업 파악활동 사항 • 위험작업 내용·시기 • 위험도 파악, 조정·조치사항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시행령(제56조)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시행령제57조(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준비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배치 관련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지침(매뉴얼 등), 내부 계획 등 업무 계획 관련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주관 회의, 점검, 환류 등 업무활동 사항 등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지표는 2019.6.1.이후 착공한 공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으로 공사를 분리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	---

C.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35	-
지표 정의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체계 및 자체 역량강화수준과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발주자의 이행점검 및 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 3.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발주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기준(지침) 등 업무 수행 체계와 공사감독자 산재예방역량강화 노력(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 등) 2. ❶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업무 체계, ❷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감소대책 이행에 대한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수준* * 조치수준은 안전시설 설치 뿐 아니라 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됨.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등 송부(고용노동부, '20.1월) 3.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의 수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결과(현장점검 및 “사망 사고 예방 특별기획점검(Patrol)” 결과 등)를 참조 <현장점검 시 주요 착안사항> ● 추락, 낙하, 붕괴·도괴, 화재·폭발·누출, 끼임, 감전, 질식 등 건설현장 주요 유해위험요인 ● 개인보호구 및 위생시설 관리 ※ 사망사고 예방 특별기획점검(Patrol) :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하여 수준평가와 별개로 실시하는 특별 점검(화재·폭발위험작업, 추락, 작업자 작업형태 위험요인 중점)
준비 사항	○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지침(매뉴얼), 활동계획 등 관련 서류 ○ 발주(감독)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계획 및 실적 등(내·외부 교육 등) ○ 시공사 위험성평가에 대한 발주자 이행 점검 및 지원(회의참석 등) 관련서류 ○ 사망사고 예방 특별기획점검 결과서 등 상시모니터링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포함 시	건설발주 미포함 시
◎안전보건활동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5	-
지표 정의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등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발주자 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평가 착안 사항	1.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자체 처리기준, 해당기준에 대한 시공자와 공유 노력 및 이행 실적 등 관리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9(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2. ❶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 사전주지(공사 입찰 시 등), 금액 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 수준, ❷금액 조정 방법 및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수 등 관리 수준과 ❸적용된 건설공사 종류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성 ※ 참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2020-63호)
준비 사항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자체 처리기준 (지침 등) 관련 서류 및 처리 실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전주지 및 도급계약서, 산출내역 및 조정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 사용 실적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④ 안전보건 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①안전보건 성과	-	5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및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가치 검토 및 환류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기본계획·각 지표에서 제시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계획된 성과측정의 원칙, 계획의 이행정도와 목표의 달성정도의 확인, 문제점 도출 2.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조치 및 차기 계획수립에 반영,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영자검토, 안전보건활동계획 등 환류 수준
준비 사항	○ 자체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계획서, 실행내역, 검토(경영자 검토 포함) 서류 ○ 성과측정 관련 시정조치·개선계획 수립·이행 관련 문서 등 ※ 참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GUIDE G-80-2012) <부록 4> 성과측정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2. 안전문화 확산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⑩ 안전보건 성과	-	10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평가 착안 사항	1. 기관의 안전문화 추진 계획 및 확산 노력도(4·4·4 안전점검의 날,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송, 캠페인, 경진대회,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사용 등) ※ 참고 : 기획재정부(2019.3.)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이해관계자·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 활동사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관련성	○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사망 감소활동과의 연계성 ○ 기관 고유 사업과의 연계성과 창의성 ○ 사례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받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의 포괄적 수준
	활동노력	○ 사회적 안전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 및 과제의 설정 ○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 문제점 제시, 해결과정 및 노력 ○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의 참여, 인력·예산의 지원 수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보건배려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 노·사의 협력정도
	추진성과	○ 안전의식 제고 등 사회적 안전가치 확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 마련 ○ 객관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성과관리
	파급효과	○ 수급업체, 발주현장, 대국민 등 활동의 영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 ○ 타 기관 적용 시의 파급성 등 평가기관 이외에 활용 가능한 수준

	자율적 활동사례(예시) 기관고유기능 작업장 안전설비 보조금 지급 사회기반시설(SOC) 운영·유지 안전문화 확산사례 TOP10 고위험작업 One Point Lesson 시트 개발·보급 근로자 안전의식수준향상 프로그램 보급·활용 사고예방을 위한 12대 골든룰 개발·운영 고위험작업 등급제 도입·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준비 사항	○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및 참여·전개·지원 실적 증빙 ○ 4·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및 실적, 기타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 주요 추진사례 ○ 근로자·이해관계자·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한 활동(1건)은 3page 이내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제출(건수 엄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3. 사망사고 감소 성과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⑩ 안전보건 성과	-	100
지표 정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성과를 평가	
적용 대상	☒ 본 평가	☐ 현장작동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 기관의 직영사업소·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 사망사고 감소성과를 사망사고자 증감인원수와 증감률을 조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사망재해 감소 시 ①>

$$50 + \left\{ ('19년 \textcircled{a}) - '20년 \textcircled{a}) + \frac{'19년 \textcircled{a}) - '20년 \textcircled{a})}{'19년 \textcircled{a})} \right\} \times 12$$

<사망재해 증가 시 ②>

$$50 + \left\{ ('19년 \textcircled{a}) - '20년 \textcircled{a}) + \left(\frac{'20년 \textcircled{a}) - '19년 \textcircled{a})}{'20년 \textcircled{a})} - 1 \right) \right\} \times 12$$

※ ㉠ : 사망사고자 수

평가
착안
사항

❖ '20년도의 사망자 수가 없는 경우 최고점(100) 적용

❖ 사망재해가 감소하여 산식①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① 산출값은 최고 100으로 제한

② 득점은 '①'의 값에 0.95를 곱하여 적용

❖ 전년도와 사망자 수 동일 시 아래점수 적용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35.0	4	28.7	7	27.6
2	31.0	5	28.2	8	27.4
3	29.5	6	27.9	9	27.3

	※ 사고사망자 수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u>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u>. 단,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 함) - 해당연도에 사고가 발생하고 익년도에 사망한 경우 : 익년도 사고사망자 수로 집계 ※ 공공기관 간의 계약 등에 의해 도급(발주 포함)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관계수급인 포함)가 발생한 경우, 도급(발주)과 수급에 해당하는 기관 모두에 사고사망자 수를 산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와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하여 은폐로 판명된 건이 확인되거나, 허위·누락·미제출·제출지연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점수 하향 조정(산재은폐가 고의적인 것으로 확인시 최하점수 부여)
준비 사항	○ 최근 2년간 발생한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양식 별도송부)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1.득점 + 2.득점